

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. 6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1. 6. 15

다. 상 정 일 자 : 2001. 6. 15

(제9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총무과장 임 양 환

나. 개정사유

- 환경과와 사회복지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인.허가업무를 종합민원 처리과로 이관하여 처리부서를 일원화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사회복지과 분장사무 중에서 다음업무를 종합민원처리과로 이관 (안 제3조 제2항 제4호, 제6호)
 - 식품접객업(일반, 휴게음식점)인.허가 및 신고처리
 - 면허증(이용사, 미용사, 조리사)발급
- 환경과 분장사무 중에서 다음업무를 종합민원처리과로 이관 (안 제3조 제2항 제4호, 제7호)
 - 비산먼지 발생사업(변경)신고
 - 대기, 소음, 진동관련 허가 및 신고
 - 오수, 분뇨, 폐수, 축산폐수 관련(배출시설 포함) 허가 및 신고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양정열)

○ 본 개정 조례안은

· 지난 제87회 임시회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개정한바 있는데 그 동안 여러 부서에서 수행해오던 각종 인허가 기능을 1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

· 당시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처리과로 개칭하고 인.허가 업무를 종합민원처리과로 이관토록 조치한바 있으나 사회복지과와 환경과의 인.허가 업무 및 신고업무중 이관되지 않은 업무를 추가 이관토록 조치함으로써 처리 부서의 일원화를 기하기 위함임.

○ 본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취지는 인.허가 업무를 어느부서에서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할 것이므로 부서간의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며,

○ 특히, 인.허가(신고 업무포함) 업무처리와 지도.단속 업무의 처리 부서가 이원화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,

○ 「시행규칙」에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부분장을 함으로써 업무의 공백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되며,

○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와의 저촉여부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첨 부 :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2항 제4호,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종합민원저리과

- 민원실 운영 및 민원상답에 관한 사항
- 민원사무 창구 즉길저리에 관한 사항
- 민원 1회방문 저리 종합에 관한 사항
- 행정사업에 관한 사항
- 차량·중기 등록에 관한 사항
- 도시계획확인원·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 관한 사항
- 외국인 토지관리 및 취득에 관한 사항
- 지적민원 저리 및 지적공부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
- 토지분할 허가 및 이동지 검사 정리에 관한 사항
-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
- 지적측량 기초점 보존관리 및 대행법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
- 법인아닌 사단·재단 등록번호 및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에 관한 사항
- 토지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
- 부동산중개업 지도·단속에 관한 사항
- 지가의 결정·공개 및 열람에 관한 사항
- 토지 공개념에 관한 사항
-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에 관한 사항
- 비산면지발생사업장 (변경)신고 수리
- 대기, 소음, 진동관련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
- 오수·분뇨·폐수·축산폐수 관련(배출시설 포함) 허가 및 신고
- 식품접객업소(유호주점, 단란주점, 휴게음식점, 일반음식점) 인허가 및 신고 처리
- 이용사, 미용사, 조리사 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항

- 농지의 전용허가 관련업무
- 건축 일반에 관한 사항
- 국민주택 및 주택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
- 주택개량등 주거환경 및 취락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
- 병무행정 및 공익근무에 관한 사항

6. 사회복지과

- 저소득 주민보호· 구호· 원호 업무에 관한 사항
- 복지시책 및 사회복지 법인에 관한 사항
-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
- 이주민 대책에 관한 사항
- 공중위생업소 인허가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
- 식품위생업소(식품접객업소 제외) 인허가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
- 식품접객업소 지도관리
- 부정· 불량식품 단속 및 식품의 유통· 관리에 관한 사항
- 공중이용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
- 이용사, 미용사, 조리사 면허증 관리에 관한 사항
-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
- 여성, 아동 복지에 관한 사항
-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
- 보육에 관한 사항
- 농촌 생활개선에 관한 사항
-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
- 묘지, 화장장 및 납골당에 관한 사항

7.환경과

-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· 시행에 관한 사항
-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

- 환경통계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환경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- 지방의 제21 추진에 관한 사항
- 환경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
-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
-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
- 민간환경단체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
-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
-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·단속에 관한 사항
- 대기 관련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
- 소음, 진동 관련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
- 환경신문고 및 환경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
- 오수·분뇨·축산폐수 관련 지도·단속에 관한 사항
- 분뇨처리장 관리에 관한 사항
- 공중화상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- 특정시설 설치 신고 및 지도·단속에 관한 사항
- 수질 측정망 고시 운영에 관한 사항
- 하천·호소·수질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
-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
-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량화에 관한 사항
- 공원·유원지·관광지 등 폐기물 처리대책에 관한 사항
- 폐기물 관련 허가 및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
- 자연보호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
- 자연생태계 및 야생 동식물 보호에 관한 사항
- 유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
- 재활용품 관리에 관한 사항

- 토양환경 보전 및 지도·단속에 관한 사항
- 청소인력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
-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
-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
- 상수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- 상수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간이상수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상수도 대행업소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사항
- 상수원 및 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
- 하수도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
-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온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농촌 하수도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야생조수보호 및 수렵단속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· 부동산중개업 지도·단속에 관한 사항	·
· 지가의 결정·공개 및 열람에 관한 사항	·
· 토지 공개념에 관한 사항	·
·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에 관한 사항	·
· 위생·환경·농지에 관련된 복합 민원처리	(삭제)
(신설)	· <u>비산먼지 발생사업장(변경) 신고수리</u>
(신설)	· <u>대기, 소음, 진동관련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</u>
(신설)	· <u>오수·분뇨·폐수·축산폐수 관련 (배출시설 포함) 허가 및 신고</u>
(신설)	· <u>식품접객업소(유호주점, 단란주점, 휴게음식점, 일반음식점) 인허가 및 신고 처리</u>
(신설)	· <u>이용사, 미용사, 조리사 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항</u>
(신설)	· <u>농지의 전용허가 관련 업무</u>
· 건축 일반에 관한 사항	·
· 국민주택 및 주택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	·
· 주택개량 등 주거환경 및 취락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	·
5.(생략)	5.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<p>6. 사회복지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저소득 주민보호· 구호· 원호 업무에 관한 사항 · 복지시책 및 사회복지 법인에 관한 사항 ·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· 이재민 대책에 관한 사항 · <u>공중 및 식품 위생업소 허가관리 (유흥· 단란주점 허가제외)</u> · 부정· 불량식품 단속 및 식품의 유통· 관리에 관한 사항 · 공중이용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· 여성, 아동 복지에 관한 사항 · <u>이용사· 미용사· 조리사 면허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</u> ·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·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· 보육에 관한 사항 · 농촌 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·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 · 묘지, 화장장 및 납골당에 관한 사항 	<p>6. 사회복지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· · · · <u>공중위생업소 인허가 및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</u> · <u>식품위생업소(식품접객업소 제외) 인허가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</u> · <u>식품접객업소 지도관리</u> · · · · <u>이용사, 미용사, 조리사 면허증 관리에 관한 사항</u> · · · · · ·

현 행	개 정 안
<p>7. 환경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 ·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 · 환경통계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· 환경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· 지방의 제21 추진에 관한 사항 · 환경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·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·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· 민간환경단체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·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· <u>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및 지도·단속에 관한 사항</u> · <u>대기 관련 허가 및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</u> · <u>소음, 진동 관련 허가 및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</u> · 환경신문고 및 환경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 · <u>오수·분뇨·축산폐수 관련 허가 및 지도·단속에 관한 사항</u> (폐수 및 축산폐수 배설시설 인허가 제외) 	<p>7. 환경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<u>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·단속에 관한 사항</u> · <u>대기 관련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</u> · <u>소음, 진동 관련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</u> · · · <u>오수·분뇨·축산폐수 관련 지도·단속에 관한 사항</u>

현행	개정안
· 분뇨처리장 관리에 관한 사항
· 공중화상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
·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
·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· 특정시설 설치 신고 및 지도·단속에 관한 사항
· 수질 측정망 고시 운영에 관한 사항
· 하천·호소·수질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
·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
·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량화에 관한 사항
· 공원·유원지·관광지 등 폐기물 처리대책에 관한 사항
· 폐기물 관련 허가 및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
· 자연보호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
· 자연생태계 및 야생 동식물 보호에 관한 사항
· 유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
· 재활용품 관리에 관한 사항
· 토양환경 보전 및 지도·단속에 관한 사항
· 청소인력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
·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

현 행	개 정 안
·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	·
· 상수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	·
· 상수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	·
·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	·
· 간이상수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	·
· 상수도 대행업소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	·
·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사항	·
· 상수원 및 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	·
· 하수도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	·
·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	·
· 온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	·
· 농촌 하수도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	·
·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	·
· 야생조수보호 및 수립단속에 관한 사항	·